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2. 5. 17.

개정 2023. 9. 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융자 지원조건, 위탁사무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보증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선정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4.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선정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6. “이차보전”이라 함은 선정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등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 등에서 대출할 경우 납입하는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조건) ① 융자지원 자금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융자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비율: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

2. 지원한도: 사업장당 총 500억원(시설자금 500억원, R&D 자금 100억원)
3. 대출기간: 10년 이내(최대 3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금리: [별표 1]에 따름

③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 인정범위,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의 2.0%
2. 대출금 인정범위: 프로젝트 총 필요자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까지 인정
3. 지원한도: 사업장 당 연 10억원 이내(시설 자금 연 10억원, R&D 자금 연 2억원)
4. 지원기간: 10년 이내

제5조(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금추천 규모·기간 등의 조정 및 순위 확정
2. 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22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전담기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한다.

⑤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취급은행 대여약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취급은행의 장과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세부내용은 약정에 따른다.

1. 대여금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 4]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사업장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2.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3.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① 심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후 기술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적합성 검토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다.

2. 기술성 평가 :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는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자금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성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③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우선 지원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금을 추천한다.

1. ‘기술역량’ 평가 고득점자

2. ‘정책적부합성’ 평가 고득점자

3. ‘시장잠재력’ 평가 고득점자

4. ‘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순위를 부여한다.

1. 제9조제4항의 승계지원 사업자

2. 국가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의 마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금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제8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사업연도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최하위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 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 및 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제1항제1호의 최하위자와 같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추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미인출 잔액 부분을 다음 연도로 승계하여 지원(이하 ‘승계지원’)할 수 있다.

1. 승계지원 대상자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한다.
2. 승계지원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10조(자금추천의 변경) ① 선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 가. 프로젝트의 목표 변경
- 나. 프로젝트의 기간 변경
- 다. 프로젝트의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 가. 사업장 대표 및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
- 나. 상호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 라. 자금추천금액과 최종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
- 마. 대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바. 취급은행의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 변경, 흡수·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추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통보서 상의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인출기한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설치·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통보서상의 공사·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금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총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R&D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 ③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1.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진 자금 또는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취급은행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장의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대출금액 변경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 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 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R&D자금은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사하거나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3. [별표 2]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R&D자금
- ⑤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 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⑦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 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⑧ 동일 추천 건을 분할하여 대여 받는 경우의 대여금 상환일정은 최초 대여 시 제출한 상환계획표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2]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2.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3.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용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4.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5. 당해 연도 전 기추천한 사업

③ 기타 용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 추천 후 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변조, 고의 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기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자금 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자금 추천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용자지원받은 경우
나. 용자지원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휴업·폐업, 부도·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용자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 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

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 지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융자지원 제외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재대상사유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6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15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전담기관은 제14조제1항

제1호(허위, 위·변조) 또는 제1항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지원 취소와 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사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제4조제2항의 대출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수행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행한다.

1. 프로젝트 진도 관리
2. 프로젝트 완료 확인
3. 프로젝트 성과 분석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에는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용자지원 시설이 주문 제작이 아닌 모델·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 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프로젝트 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및 금융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사업자의 의무) ① 선정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행보고: 자금 사용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 보고 요구 시
2. 완료보고: 자금 사용 완료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7]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보고: 사업기간 및 완료 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은행의 프로젝트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선정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5. 사업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각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선정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하며, 각각의 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5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별표1]의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⑦ 전담기관, 취급은행, 선정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 ⑨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자금추천, 제13조의 지원제외, 제14조의 지원취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자 및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이 지침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 귀속한다.

- ② 사업자는 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계산 등) 선정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정보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2022. 5.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차지원 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별표 1]

대출금리

(제4조제2항 관련)

대출 방식	대출금리 ¹⁾ (A)	용자 취급수수료 ²⁾ (B)	대여금리 (C)
간접대출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2.00%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A-B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용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용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① 시설자금

-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용도)**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인정 범위)**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구분	내용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
건축비	• 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 • 경매 매입 인정 •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유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설계비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	•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용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단,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둘)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

○ 불인정 사항

-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취득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 토지매입비(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비용
- 임대·매각 등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

② R&D자금

-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인정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의 직접비 사용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인정
 - * 단,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한계기업 기준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재무·영업상태가 지극히 부실한 기업(하한계)은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 신청 불가

□ 하(下) 한계 기업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위험성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 자본잠식률 $= \frac{(\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text{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도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 > \text{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별표 4]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7조제1항 관련)

필수 제출서류	비고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한하며,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도입계획서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한하여 제출
발표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PPT 원본 파일을 제출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빙서류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별표 5]

기술성 평가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정책적 부합성 (68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	① 탄소중립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성	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산정방법의 신뢰도	②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	60점
		③ 감축량 산정방법 신뢰도	정성	5점
	소계			
기술 역량 (15점)	기술혁신성	④ 핵심지표 산정 적절성	정성	2점
		⑤ 목표의 도전성	정성	3점
	기술경쟁력	⑥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	정량	3점
		⑦ 선도프로젝트 추진역량	정량	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추진 역량	⑧ 전담조직 보유여부	정량	2점
		⑨ 관련 인력 보유 현황	정량	2점
	소계			
시장 잠재력 (10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성	⑩ 선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정성	2점
		⑪ 선도프로젝트의 시장경쟁력	정성	2점
	향후 10년의 시장규모와 매출 규모	⑫ 시장규모 예측의 적절성	정성	3점
		⑬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매출목표	정성	3점
	소계			
경영 역량 (7점)	친환경·저탄소 추진 역량	⑭ 친환경·저탄소 활동 실적	정량	2점
	계획수립의 충실도	⑮ 계획의 완성도	정성	3점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⑯ 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정성	2점
	소계			
합계				100점

※ 기술성 평가기준은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별표 6]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15조제1항 관련]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용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용자 잔액 전액 회수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관련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년	
용자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중단한 경우	2년	
기타 전담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이 사업기간 內 사전 통보를 한 경우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용자 잔액 전액 회수

[별표 7]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제19조제1항 관련]

※ 용자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시설자금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용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용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용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용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용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용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 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용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용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R&D자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를 준용함.